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745
------	------

2020. 9. 7.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0. 9. 7.)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 시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나. 사 무 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다.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라. 출연의 필요성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 임직원교육, 경영지도·컨설팅, 정책 연구 등 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

마.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 지방공기업·출연기관 컨설팅 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법정전담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법정전담기관)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채용대행 사업
-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

바. 출연대상 기관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법인설립 : 1992. 3. 2.
 - ※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2016. 6)
- 조직 : 1본부 2실 2센터 / 정원 49명 ※현원 41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1명, 감사 1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당연직이사)
- 시설현황 : 건물(지상6층) 연면적 2,550㎡, 부지 640㎡
- 위치도



청사현황



위치도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8,000천원
- 산출근거 : 경상운영비(기본급) 50,000천원,
 시·도등 지원사업비 28,000천원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세출예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 및 출연근거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출범(지방자치경영협회, 1992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이하 “평가원”)은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¹⁾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교육연수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이 되었음(제78조의4¹⁾).
- 현재 조직은 1본부 2실 2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원 12명(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감사 1명, 비상임이사 9명), 직원 41명(정원 49명), 전문연구인력 380명(상근연구인력, 자문위원, 경영평가단 등), 정원 외 상근자 14명²⁾ 등이 근무하고 있음.

1)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파견공무원 4명, 무기계약직(청사 미화·경비) 8명, 비서사무직 1명, 한시계약연구원 1명이 있음.

다. 평가원에 대한 출연의 적정성 검토

- 평가원의 2021년도 수입예산 153억 4천만원(추정치) 중 출연금은 43억 7천만원(28.5%)이며, 자체 사업수입은 108억 9천만원(71%), 임대료 수입 등은 8천만원(0.5%)임.
- 전체 출연금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10억원 수준이며, 나머지 30억원 이상을 지방공사·공단이 부담⁵⁾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시·도 재정력지수(50%)와 공기업수(5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서울시는 재정력지수 1.137(4구간, 4천 2백만원), 공기업수 31개(3구간, 3천 6백만원)에 해당돼 2016년부터 계속해서 7천 8백만원을 출연하고 있음.

<시·도별 출연금 산정기준>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2구간-40%)	세종, 제주	18	0.5 (2구간-40%)	세종, 제주	18
1 (2구간-40%)	0.5이하 ~	24	1 (2구간-40%)	1~15	24
2 (기준구간)	0.5~0.7이하	30	2 (기준구간)	16~25	30
3 (2구간+20%)	0.7~0.9이하	36	3 (2구간+20%)	26~35	36
4 (2구간+40%)	0.9초과 ~	42	4 (2구간+40%)	36~	42

5) 2017년부터는 지방공기업도 매출액(50%), 직원수(30%), 자산(20%)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 2021년도에 5억 7천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부담할 계획임.

〈주요 시도별 출연금 배분금액〉

(단위: 천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20	2021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 (A)	수	구간	금액 (B)
서울특별시	78,000	78,000	-	1.137	4	42	31	3	36
경기도	84,000	84,000	-	1.127	4	42	97	4	42
인천광역시	60,000	60,000	-	0.806	3	36	15	1	24
부산광역시	60,000	60,000	-	0.783	3	36	9	1	24

- 서울시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정책개발, 임직원 전문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27명)의 인건비 5천만원과 시·도 등 지원사업비(정책연구, 컨설팅, 발전사업) 2천 8백만원으로 집행될 계획임.

〈서울시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산출 내역
계	78,000	
경상운영비	50,000	
인건비	50,000	
기본급	50,000	• 1,000,000천원 × 5% (전문직 27명)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경영평가, 컨설팅 지원, 임직원 전문교육 전문인력(27명) 인건비
시도등지원사업비	28,000	
정책연구	8,000	• 외부전문가 보상비, 인쇄비, 회의비, 포럼 등
컨설팅	8,000	• 외부전문가 보상비, 인쇄비, 회의비 등
발전사업	12,000	• CEO 및 신규입사자, 온라인 등 무료교육

- 최근 3년간 평가원의 서울시 관련 추진사업을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 정책연구와 전문교육 등을 수행하였음.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서울시 출연금과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연도	출연금 규모	시도 출연내역	서울시 출연내역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18	4,022	1,014	7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공사, 자치구 24개 시설공단 ◦피드백·맞춤형 컨설팅 실시(서울시): 16개 기관, 20건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확대·강화
'19	4,217	1,020	7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울시)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지방상하수도 요금현실화 목표관리제 개선 방안, 지방공공기관의 통합 신규채용 실행방안 등 ◦설립·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전문 검토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서울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무료교육 13개 과정, 654명 ◦심층, 맞춤형, 피드백 컨설팅 등 실시(23개기관, 25건)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확대·강화
'20 상반기	4,300	1,014	7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울시): 하수도,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자치구 24개 시설공단 ◦지방공기업 정책연구(서울시) ◦설립·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전문 검토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심층·맞춤형 컨설팅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확대·강화

○ 이처럼 평가원은 서울시 공기업과 출연기관 등에 대한 정책연구나 법·제도 자문, 경영평가를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7개 시·도 모두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는 등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됨.

- 지난해 미제출되어 지적되었던 평가원 출연요구서(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는 올해 정상 제출됨.

- 다만, 지난 2월 평가원 소속의 전·현직 책임연구원이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연구용역의 인건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밝혀진 바,
내부감사 강화를 통한 인적쇄신과 연구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지방공기업평가원 임원명단

순번	성명	직책	임기	주요경력
1	최치국	이사장	2020.4.20 ~ 2023.4.19	現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前 한국정책공헌연구원 원장 前 부산연구원 연구지원실장
2	성기석	상임이사	2020.2.5 ~ 2023.2.4	現 지방공기업평가원 상임이사 前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장 前 국민안전처 정책기획관 국장
3	고기동	당연직이사	-	現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前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前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담당관
4	조인동	당연직이사	-	現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前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장 前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5	김주이	당연직이사	-	現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 국장 前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과장
6	최원용	당연직이사	-	現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前 경기도 의회사무처장 前 경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7	박일웅	당연직이사	-	現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前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前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장
8	허동훈	위촉직이사	2020.6.12 ~ 2023.6.11	現 인천연구원 부원장 前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前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9	김시곤	위촉직이사	2020.6.12 ~ 2023.6.11	現 대한교통학회 회장 現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前 (사)대중교통포럼 회장
10	제종길	위촉직이사	2020.6.12 ~ 2023.6.11	現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前 안산시장, 17대 국회의원 前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11	여영현	위촉직이사	2020.6.12 ~ 2023.6.11	現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前 전남개발공사 등재이사 前 국가청렴위원회 위촉전문위원
12	박근서	감사	2020.6.12 ~ 2023.6.11	現 성도이현회계법인 대표이사 前 미국KPMG회계법인(연수) 前 산동회계법인

[참고자료 2]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745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 시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 나. 사무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 다.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라. 출연의 필요성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 임직원교육, 경영지도·컨설팅, 정책연구 등 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

마.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 지방공기업·출연기관 컨설팅 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법정전담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법정전담기관)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채용대행 사업
-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

바. 출연대상 기관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법인설립 : 1992. 3. 2.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16.6)
- 조 직 : 1본부 2실 2센터 / 정원 49명 ※현원 41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1명, 감사 1명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당연직이사)
- 시설현황 : 건물(지상6층) 연면적 2,550㎡, 부지 640㎡
- 위치도



청사현황



위 치 도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8,000천원
- 산출근거 : 경상운영비(기본급) 50,000천원,
시·도등 지원사업비 28,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공기업담당관 공기업총괄팀 김동규 (☎2133-6779)